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, 대리운전 관련 보험 판매 활성화를 유도

- 금감원은 대리운전 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외국의 대리운전 보험제도를 소개하는 등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.
- 일본의 경우, 운전대행법을 제정('02.6.20)에 따른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 의무화로 대리운전 중 사고를 동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으며, 무보험 대리운전의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함.
 - 반면, 미국에서는 지정운전자 제도(Designated Driver Program: 특정인이 음주 종료 후 그룹의 다른 사람을 집까지 운전해주는 제도)라는 법적 제도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일부 회사의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.
- '09.2월 현재 대리운전위험을 담보 특약으로 가입한 가입자 수는 93,73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.2% 상승하였으며, 가입차량대수(개인용자동차보험) 기준으로는 2.9% 상승한 1,127만건을 기록함 .
- 한편, 자동차 취급업자의 종합보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대리운전업자의 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동기대비 13.7% 증가한 68,859명으로 나타남.
- 이 같이 대리운전 이용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며, 무보험 대리운전자로 인한 피해사례는 빈발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 시 소비자의 유의사항 마련이 필요함.
- 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업체(콜센터)를 이용함으로써 가해사고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해야 하며, 대리운전업체가 아닌 임의 영업하는 대리운전자를 통한 대리운전은 무보험 또는 보상한도 낮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.
 - 또한, 대리운전 이용이 잦은 경우에는 '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'에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'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'을 추가하는 것이 유익함.

(대리운전관련 보험 가입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특수보험팀, 4/17)